

단일특허 패키지

간소화되고 포괄적이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특허를
보호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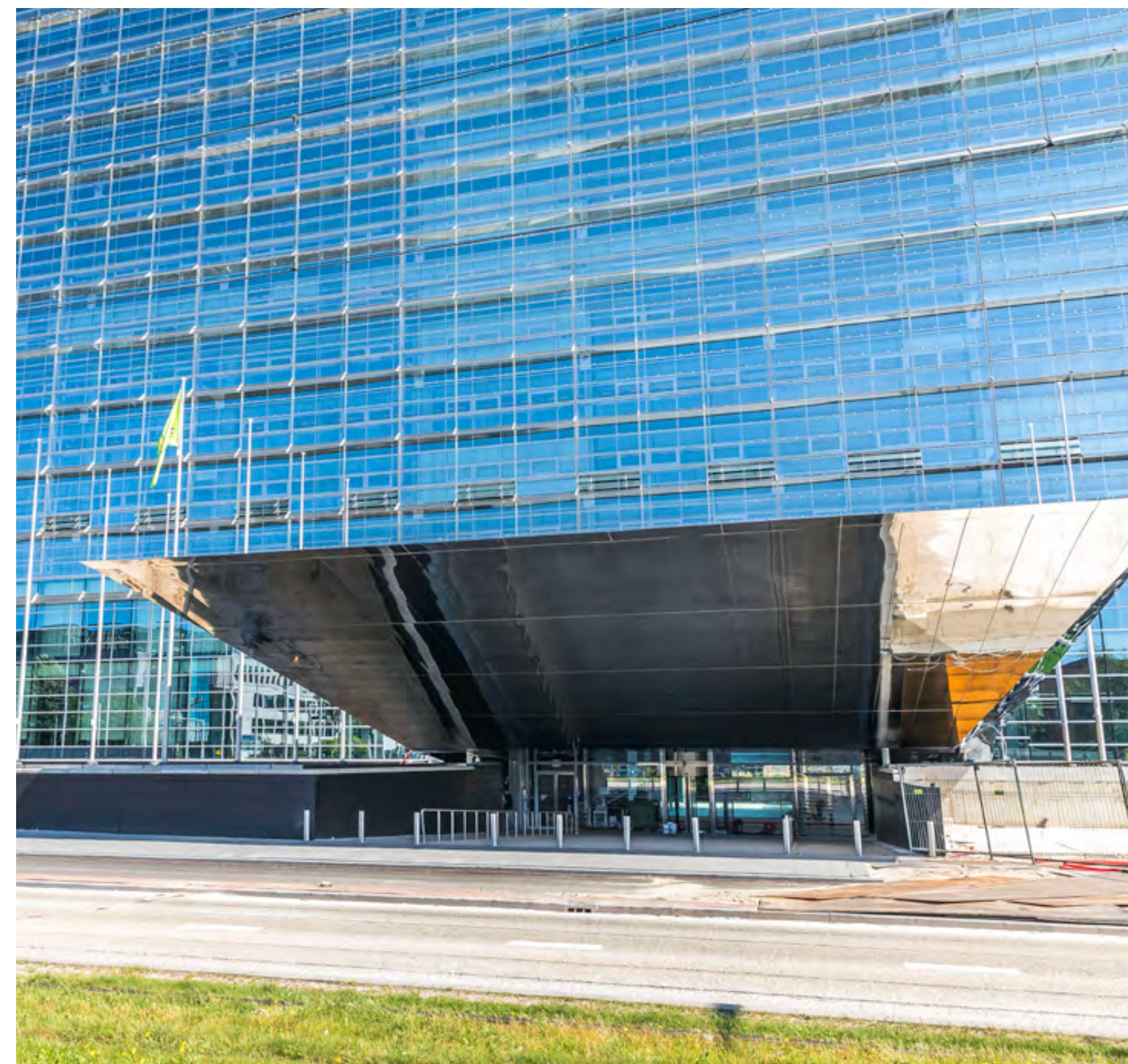
2024년 9월

단일특허

기존의 중앙 집중식 유럽특허 부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한 방식입니다. 통합특허법원과 함께 유럽 전역의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혁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합니다.

유럽특허는 혁신적인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성 있는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고 사업을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유럽특허를 검증, 유지 및 시행하는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일특허 제도는 유럽 전역에서 발명품을 보호하는 절차를 보다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이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성을 낮춘 중앙집중식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적 절차와 결정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국가 특허 번들에서 ...

1970년대부터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유럽에서 특허를 부여하는데 단일 중앙 집중식 절차를 도입해 왔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출원된 특허는 광범위하게 검색되고 법적으로 검토되어 높은 품질의 특허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중앙형 등록 절차 이후, 특허권자는 최대 45개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여된 유럽특허는 단일특허권이 아닌 국가별로 검증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특허 번들이므로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부여된 유럽특허는 단일특허권이 아닌,
국가별로 검증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특허 번들이므로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단일특허권으로

단일특허 제도는 참여하는 EU 회원국에 대해 이러한 단점을 없애줍니다. **단일 효과를 갖춘 새로운 유럽특허("단일특허")**는 균일하고 광범위한 지역 특허 보호로 이어지는 간소화된 경로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 및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유럽특허의 중앙 집중식 사전 허가 절차는 이제 중앙 집중식 사후 허가 절차로 보완됩니다. 여러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유럽특허를 검증하는 대신 특허 소유자는 EPO에 한 번만 신청하여 단일특허를 취득할 수 있어, EPO는 단일특허 및 관련 수수료 지불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샵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일 효과를 갖춘 새로운 유럽특허는 균일하고 광범위한 지역 특허 보호로 이어지는 간소화된 경로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 및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시행 방식

단일특허는 기존의 유럽특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며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혁신적인 기업은 하나 이상의 EPC 계약 국가에서 유럽특허 검증 시 국가별 경로를 택할지 단일특허 보호 방식을 취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제도를 기존 제도와 결합하여 단일특허를 얻는 방식과 새로운 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EPC 계약국가 또는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UPCA)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고전적인 유럽특허 검증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는 기존의 특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며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혁신적인 기업은 하나 이상의 EPC 계약 국가에서 국가별 경로를 택할지 단일특허 보호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새 제도를 기존 제도와 결합할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식

특허 소유자가 EPO에 의해 등록된 단일특허를 가질 수 있으려면 먼저 유럽특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즉, 유럽특허 신청은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럽특허조약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출원되고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사전 허가 절차가 이제 EPO의 중앙 집중식 사후 허가 절차에 의해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일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간단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럽특허는 참여하는 모든 EU 회원국과 관련하여 동일한 청구권 세트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일 효과에 대한 요청은 유럽특허 부여 공고가 발표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부여 결정이 통지된 후에는 언제든지 더 일찍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전환 기간을 제외하고 단일특허가 부여된 후에는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럽특허청은 단일 효과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단일특허를 등록합니다.

단일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간단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허 소유자는 먼저 유럽특허를 취득해야 하며, 그 후 단일 효과에 대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단일 효력에 대한 요청은 전적으로 무료입니다. 즉, 이에 대해 EPO에 제출, 검사 또는 등록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일특허의 갱신 수수료는 기업들에 매우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럽특허의 평균 수명인 최초 10년 동안 유지하는 총 비용은 5,000유로 미만입니다.

수수료와 간접 비용을 비교해 보면 단일특허의 전체 비용은 현재 4개국에서 고전적인 유럽특허를 검증하고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 전체 비용 절감 가능성은 간소화된 관리에 의한 비용 절감을 고려했을 때 명확해집니다. 단일특허 고전적인 유럽특허의 경우, 상이한 금액에 대해 서로 다른 갱신 수수료를 각국의 특허청에 각기 다른 통화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경우 특히 시한에 관해서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단일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에 중앙 집중식으로 갱신 수수료를 단일 유로 통화로 1 회만 지불하고 표준화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처리되며 대리인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제 유럽특허청에서 최초 특허 출원 시 세 가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500유로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일특허 갱신 수수료

-	—	11년차	€ 1 460
2년차	€ 35	12년차	€ 1 775
3년차	€ 105	13년차	€ 2 105
4년차	€ 145	14년차	€ 2 455
5년차	€ 315	15년차	€ 2 830
6년차	€ 475	16년차	€ 3 240
7년차	€ 630	17년차	€ 3 640
8년차	€ 815	18년차	€ 4 055
9년차	€ 990	19년차	€ 4 455
10년차	€ 1 175	20년차	€ 4 855

◦ 갱신 수수료 연체료 가산금 = 연체료의 50%(RFeesUPP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용권의 경우 갱신 수수료 15% 감면(UPR 규칙 12, RFeesUPP 제3조)

고전적인 유럽특허 제도 하에서 4개 주요 유럽 국가의 동등한 보호를 받는 특허와 비교한 단일특허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O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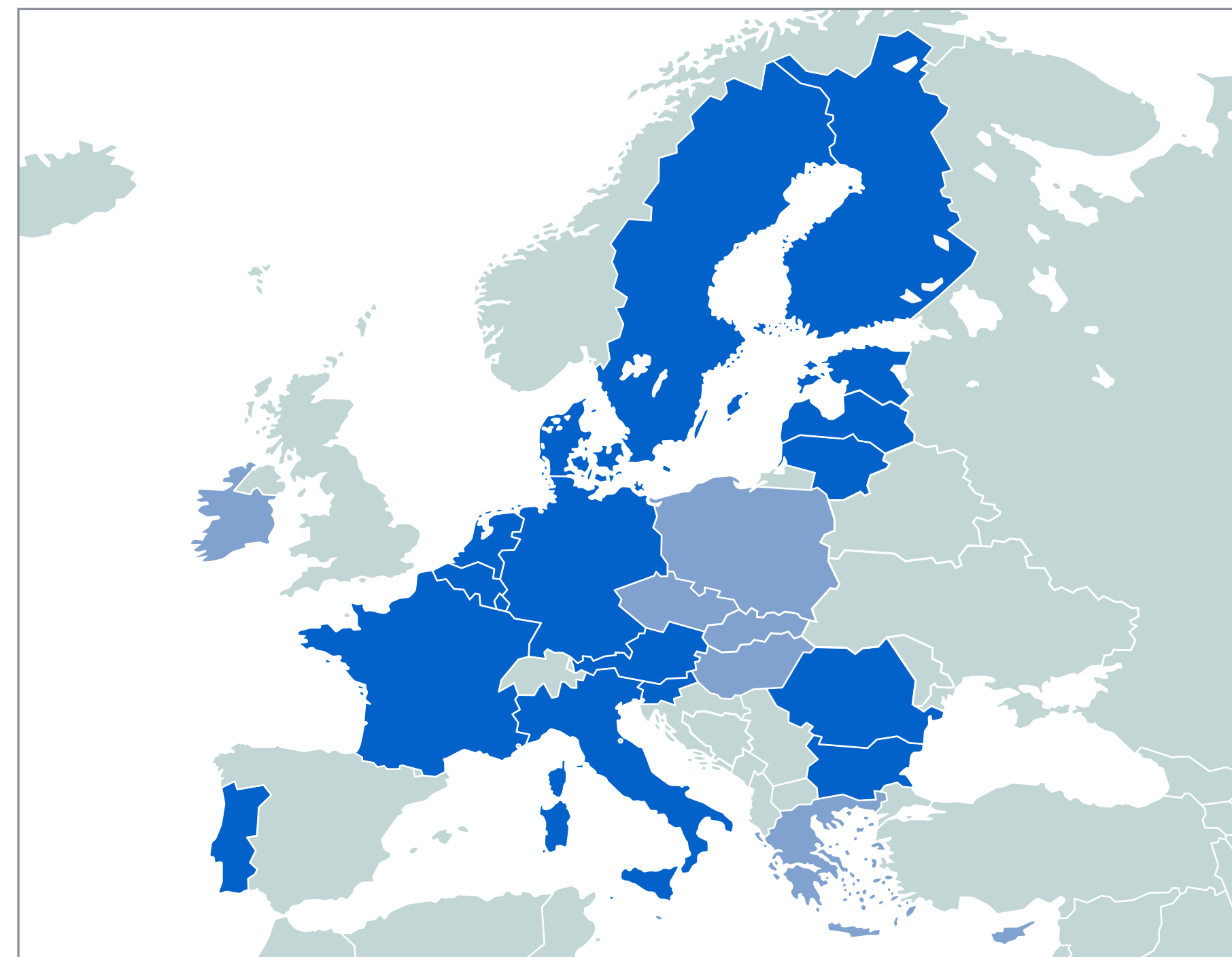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며 기업들에 매우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범위

단일특허의 지리적 범위는 잠재적으로 27개 EU 회원국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일특허의 적용을 받으려면 회원국은 강화된 협력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일특허가 등록될 때 통합특허법원협정을 비준해야 합니다.

특정 단일특허의 지리적 범위는 수명 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며, 해당 단일특허가 등록된 후 UPCA를 비준한 국가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25개국에는 18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을 비준한 국가(짙은 파란색)가 포함되며, 7개국(하늘색)(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은 UPCA를 비준하면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은 원할 경우 추후 강화된 협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특허를 위한 단일 법원

새로운 전담 통합특허법원 (UPC)은 권리의 범위와 그 한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균일하면서 실질적인 특허법을 적용합니다.

침해 또는 파기에 관한 분쟁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참여 EU 회원국에 대한 새로운 전담 특허 중앙 사법기관인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특히 사법 집행이 더욱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럽에 전담 특허법원이 없었다는 것은 특허가 다양한 국가 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UPC는 이 복잡한 절차를 종결합니다. 단일특허 보유자와 고전적인 유럽특허 보유자는 이제 관할권에 등록된 국가에서 매우 간단한 특허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통합특허법원은 제1심법원, 항소 법원 및 등록부로 구성됩니다. 부여된 권리의 범위와 그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 동일한 실체적 특허법을 적용합니다. 판정은 법적 및 기술적 자격을 갖춘 판사로 구성된 다국적 배심원단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그들의 결정은 최고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더 큰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일치된 판례법을 확립합니다.

UPC 이전의 절차는 더욱 간단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입니다. 각 회원국에서 소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더욱 낮아집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패소할 경우 승소한 측에 부여될 수 있는 회수 가능 비용의 상한액을 낮추는 이점도 있습니다.

단일특허 이외에도, UPC는 고전적인 유럽특허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단, 2030년 5월 31일까지의 이행 기간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새로운 단일특허 제도는 통합특허법원이 운영을 개시한 시점인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개시 및 편집자

유럽특허청

© 유럽특허청 2024년 9월

epo.org/unitary

내용 책임자

Directorate Patent Developments & IP Lab (D 5.2.1)
and Unitary Patent Division (D 5.3.2.2)

주소

Bob-van-Bentham-Platz 1 | 80469 Munich | Germany

전화

+49 89 2399-0

이메일

support@epo.org